

제25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치 및  
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# 검 토 보 고 서

【최봉희 의원 발의】



2025. 03. 24.

행 정 위 원 회  
전 문 위 원

#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검 토 보 고 서

## 1. 경 과

의안 제489호로 2025년 3월 10일 최봉희 의원 외 4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5년 3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## 2. 제안이유

- 가. 이용료 반환 기준을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서 「평생교육법 시행령」으로 변경하여,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의 공공교육시설로서의 성격을 보다 명확히 하고, 법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고자 함.
- 나. 아울러, 이용료 감면 관련 규정을 “감면 또는 면제”에서 “감경 또는 면제”로 조정하여 중복 표현을 제거하고 법률적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가. 이용료 징수 규정 정비 (안 제9조)
- 나. 이용료 반환 기준 변경 (안 제10조)

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평생교육법 시행령」
- 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- 다. 입법예고(2025.3.12.~2025.3.18.) 결과: 의견 없음

## 5. 검토의견

### ○ 조례 일부개정 배경 및 취지

- 우리구(區)의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는 학생들의 진학 지원 및 진로 탐색을 위해 2014년 개관 후 대학입학정보센터와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로 2가지 위탁 사업을 운영 중임.
- 현재 본 조례에서 준용하고 있는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은 그 모(母)법이 「시설강습소에관한법률(1961.9.18. 제정)」이며, 개정하고자 하는 「평생교육법 시행령」은 그 모(母)법이 「사회교육법(1982.12.31. 제정)」으로써 평생교육법은 평생 교육 진흥이라는 헌법 정신에 의거 사회교육을 제도화하고, 모든 국민에게 평생을 통한 사회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제정된 법률임.
- 2개의 법률 모두 국민의 평생 교육 진흥에 이바지하는 본질적 목적을 가지나, 우리 구(區)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의 공공 교육시설로서의 센터 성격을 명확히 하고자 그 근거 법률을 변경하고자 함.

### ○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

| 현 행   | 개 정 안   |
|---|---|
| <p><b>제9조(이용료의 징수)</b><br/>          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<b>감면</b> 또는 면제할 수 있다<br/>           1. ~ 4. (생략).</p> | <p><b>제9조(이용료의 징수)</b><br/>          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<b>감경</b> 또는 면제할 수 있다<br/>           1. ~ 4. (생략).</p> |

- **안 제9조의 개정사항은 용어의 변경(감면→감경)으로써 “감면”은 부담을 덜어주거나 면제한다는 사전적 의미<sup>1)</sup>를 지니므로 이미 그 단어에 면제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음. 따라서 이용료의 감면 또는 면제를 감경 또는 면제로 수정하여 동의어 반복을 삭제하고자 함.**

| 현 행  | 개 정 안   |
|--|---|
| <p><b>제10조(이용료의 반환)</b>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.</p> <p>3. 수강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「<u>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</u>」 제18조제3항에 따라 <u>수강료</u>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.</p> | <p><b>제10조(이용료의 반환)</b>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.</p> <p>3. 이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「<u>평생교육법 시행령</u>」 제23조를 <u>준용하여 이용료</u>의 전액 또는 일부 반환</p> |

- **안 제10조는 프로그램 이용자가 반환 요청 시 전액 또는 일부 반환의 준용 규정을 「학원법 시행령」 제18조제3항에서 「평생교육법 시행령」 제23조로 개정하는 내용임.**

## ○ 종합의견

- 「평생교육법」 제5조에서 평생교육 기회 부여를 위해 관련 정책 및 사업 추진 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있기에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재정 부담 등을 수반하는 내용은 없음.
-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동의어 반복을 방지하기 위한 용어의

1) 감면(減免): 매겨야 할 부담 따위를 덜어주거나 면제함  
 감경(減輕): 줄여서 가볍게 함  
 면제(免除): 책임이나 의무 따위를 면하여 줌  
 (출처: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)

변경(감면→감경)과 이용료 반환 규정의 준용 법률을 변경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며 개정을 통해 법률적 명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

- 다만, 이용료 반환 기준 준용 법령 상의 반환 사유와 반환액을 비교<sup>2)</sup>하면 실질적 내용 측면에서는 큰 차이점은 없으나, 현재 본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의 모(母)법이 「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(1961.9.18. 제정)」이므로 근거 법령을 「평생교육법」으로 변경하여 공공 교육 시설로서의 성격과 국민의 평생학습 및 교육 받을 권리 보장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자 하므로 일부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됨.

2) 【준용 법률 내용 비교】

| 구분   | 「학원법 시행령」 제18조제3항  | 「평생교육법 시행령」 제23조  |
|------|--|---|
| 조문제목 | 교습비 등의 반환 등  | 학습비의 반환   |
| 반환사유 | ① 학습자가 격리된 경우<br>② 학원의 등록말소·폐지·정지명령<br>③ 학원 설립·운영자가 교습 불가<br>④ 학습자의 포기 | ① 교육시설의 폐쇄·운영정지·등록취소 등<br>② 기관의 설치·운영자가 교습 불가<br>③ 학습자의 포기<br>④ 그 밖 |
| 반환액  | 사유별 금액 상이<br>(별표4)   | 사유별 금액 상이<br>(별표 3)   |

# 참 고 자 료

## 1 평생교육법

제5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과 평생교육사업을 수립·추진하여야 한다.

## 2 평생교육법 시행령

제23조(학습비의 반환) 평생교육기관의 설치·운영자는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표 3의 반환기준에 따라 학습자에게 학습비를 반환하여야 한다.

## 3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18조(교습비등의 반환 등)

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반환사유(이하 “반환사유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법 제5조의2에 따라 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경우
- 1의2.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원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소가 폐지된 경우 또는 교습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
2. 학원설립·운영자,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
3.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

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4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등을 반환하여야 한다.